

윤리규정

2007년 4월 8일 제정

2008년 6월 8일 개정

2009년 7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운동사협회 회원 및 운동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규정서약) 대한운동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회 운동학 학술지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에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운동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자와 본회의 윤리

제6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서,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3. 전문가로서의 자세로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연구의 진실성으로서,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가 한다.
5. 연구결과를 출판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 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라.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 바.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 사. 본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하는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 등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

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제출)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3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3장. 연구윤리교육과 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

제10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본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학술지, 소식지, 홈페이지 안내, 학술활동 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본회는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11조(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 ①본회는 본회 실정에 적합한 윤리규정 시행세칙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고 운영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윤리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②본 규정은 학술지 논문 외에도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 및 연구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윤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원칙적으로 문서화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2007.04.08]

이 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8]

이 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27]

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